

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7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7.

발의자 : 황주홍 · 이종걸 · 이찬열
이개호 · 강창일 · 조배숙
유성엽 · 정인화 · 윤소하
윤영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마다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쌀의 이용 및 소비에는 한계가 있으며, 재고량 증대에 따라 연 수십억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쌀 이용 및 소비에 대한 국가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악화로 재고 쌀의 대북 지원 역시 불가능하며, 국제식량원조협약(FAC) 미가입으로 인해 해외 지원 역시 어려운 상황임.

따라서 이 법을 개정해 국내 쌀 가공 업체에서 일정량 이상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도 일정량의 국내산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(안 제24조의2 신설).

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7호 중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을 “단체 급식 및 쌀가공산업에서 국내산 쌀의 이용에 관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2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국내산 쌀의 이용) ① 국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쌀 가공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산 쌀을 일정량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2020년까지는 쌀 가공을 영업으로 하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한다.

② 국가는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 국내산 쌀을 일정량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산 쌀의 일정량 및 확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 7. <u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</p>	<p>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단체 급식 및 쌀가공산업에서 국내산 쌀의 이용에 관한</u> -----</p> <p><u>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4조의2(국내산 쌀의 이용) ①</u></p> <p><u>국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쌀 가공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산 쌀을 일정량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다만, 2020년까지는 쌀 가공을 영업으로 하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한다.</u></p> <p><u>② 국가는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 국내산 쌀을 일정량 이상 이용할</u></p>

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산
쌀의 일정량 및 화대 등은 대
통령령으로 정한다.